

강정숙: 일단 마음이 바빠 우선 이것 올립니다만 양이 많지요? 일본 기소장에 일본군 책임 부분이 언급된다면 굳이 일본군과의 관련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없는데. 아니라면 할머니 경험을 콕콕 지우고 가해자 책임부분을 올려야 하겠지요. 오늘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오기 때문에 ...

기소장 증인 송신도 자료

증인 송신도는 1922년 충청남도 논산군에서 태어났다. 12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16세 때, 어머니로부터 결혼을 권유받고, 첫날밤이 싫어 식을 올린 날 밤, 옷만 입은 채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친정에 사는 것도 불가능해서, 증인은 충청남도 대전의 아는 사람 집에 몸을 맡겼다. 대전에서 자수 등으로 하여 간신히 생활했다.

1938년 중년의 조선인 여성에게 「전쟁터에 가서 일하면 돈을 번다.」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고도 혼자서 살 수 있다.」 고 권유받았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려고 했던 증인은 그 사람의 제안에 응락하였다. 이때에는 「위안부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조선인 여성과 평양까지 갔더니 10대 후반이라고 생각되는 여성들이 다수 모여 있었다. 가는 도중에도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평양에서는 조선인 남성이 데리고 갔다. 국경을 넘어 한코우漢口를 거쳐 발음?武昌으로 끌려갔다. 증인이 武昌에 간 시기는 1938년 말경으로 일본군이 우한武漢공략한 직후일 것이다. 武昌에 도착하여 증인이 끌려간 곳은, 육군전용 군 위안소였다. 군 위안소의 건물은, 기와집의 커다란 이층건물이었다. 원래는 중국인 상점이었던 건물을 개조한 것처럼 보였다. 막 전쟁이 끝난 직후였다. 「위안부」 들은 시체 처리까지도 해야만 했다. 증인도 벽에 있는 혈흔을 씻어내는 일을 해야만 했다. 군위안소로의 개조작업은 목수 출신의 군인이 하였다. 이 군 위안소는 「세계관」이라는 이름이었다. 武昌에 도착하자 성병검사를 받았다. 이 시기 처음으로 증인은 자신의 집을 나와 혼자가 되어 일을 하기 위해 멀리까지 왔는데 어떤 것일까 증인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세계관」의 「주인」은 키가 작은 조선인 남성이었다. 武昌에는 그 위에 「야마토관」 「코토부끼관」이라는 이름의 군 위안소가 있었다. 「세계관」에는 십 수명의 「위안부」가 있었고, 모두 조선인이었다. 그러나 조선어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위안부」들끼리도 친하게 말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증인은 「세계관」에서도 가장 어렸고 생리도 본 적 없는 아이였다. 처음으로 군인의 상대를 해야만 했을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 지도 모르고, 계속 울고 도망쳐 나왔다. 처음으로 증인의 방에 들어온 타카하시 장교는, 증인이 울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런데 그 장교는 그것을 사무실에 이야기하여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증인에게 불같은 화를 냈다.

사무실에서 혼이 난 증인은 그곳 지리도, 말도 모르고, 돈도 없고, 기차를 타는 방법도 모른 채, 주위를 군인에게 둘러싸여, 도망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그래도 막상 군인이 들어오자 너무 싫고 두려워, 또 울면서 도망쳤다. 증인은 업자로부터 빵을 맞아 코피를 흘리고 식사를 하지도 못하고 좁은 곳에 갇히기도 했다. 그러나 완전히 도망쳐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증인은 울면서, 군인의 성욕처리의 도구가 되었다.

군위안소의 「위안부」에게는 군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그 허가가 내리기 전부터 「세계

관」에는 군인이 쇠도했다. 군 위안소의 이용자는 군인에 한정되었다. 이때 온 군인은 제6사단, 제9사단 등에 소속된 이들이었다. 제 6사단, 제9사단은 제11군 예하부대로서 당시 제11군 사령관은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 1938.6-40.3, 이후 제6방면군, 지나파견군총사령관에 종사)였다. 그 상급 중지나파견군사령관 하타준로쿠(畑俊六 1938.2-12)였다.

여기서 증인은 「카네코(金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매일, 십 수명이나 되는 군인을 상대를 해야만 했다. 생리를 할 때에도 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특히, 일요일에는 군인이 많았고 군인들은 일방적이고도 야만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한 생활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위안부」들은 너무 지쳐 군인의 요구를 거부하려고 하면, 칼로 위협을 받거나, 맞는 등 폭행을 받는 것이 종종 있었다. 증인의 몸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다. 그리고 증인의 오른쪽 귀는 들리지 않는다. 증인의 신체에 남아 있는 「위안부」 시절의 상처이다. 더욱이 자포자기가 된 군인 가운데에는, 적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라면 여기서 죽고 싶다며, 증인에게 같이 할복자살을 할 것을 강요하는 자도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고 싶은 증인에게 있어서는, 할복자살 강요는 매우 두려운 것이었다.

군 위안부 중에는 결핵, 말라리아, 성병 등 병에 걸린 이도 있었다. 환자는 별도로 마련된 작은 방으로 옮겨졌다. 적의 포탄에 맞아 죽은 자도 있다. 병 때문에 군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 때문에 주인에게 맞아, 절망하여 화장실에서 크레졸 원액을 마셔 자살한 「위안부」도 있었다. 목매달아 죽은 「위안부」도 있었다.

군 위안소에서는 「사쿠(콘돔)」의 사용이 의무였다. 그러나, 군인 가운데에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자도 많았다. 그 탓에, 임신된 「위안부」도 많았는데, 임신해도 휴가는 허락되지 않았고, 내쫓기기도 하였다. 증인도 임신했지만, 계속 성행위를 강요당해, 7개월 쯤에 사산되었다. 그 때, 증인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서 출산했다. 겨우 아이의 몸을 증인의 몸에서 꺼낸 때에는, 아이는 포도색이 되어 사망했다.

이렇게 군 위안소에 감금되어, 조직적, 집단적, 지속적으로 강간된 것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불능한 정도로 깊게 상처받았다.

증인은 약 3년간 「세계관」에 살았지만, 임신했기 때문에, 내쫓겨, 한코우(漢口)의 해군 위안소에서 세탁·청소 등의 잡일을 하면서 출산한 후, (중국식 발음 확인요)(岳州)(카쿠슈)로 옮겨졌다. 漢口에서 출산한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졌다. 岳州에서도 군 위안소에서의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 외에, 安寧(안니이), 長安(초안), 호킹 등, 각지의 위안소에 끌려갔다.

더욱이 그들의 군 위안소에서 특정 부대 소속으로서 각 전쟁터에 끌려다녔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어떻게 두려워해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부대소속의 경우는 군의가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 성병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점차 전쟁 상황이 엄해지게 되어, 증인과 「위안부」들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 갔다.

일본군은 중국군의 포로 살해장면에 「위안부들」을 세웠다. 구멍을 파고, 그 앞에 포로의 눈을 가리고 포로를 군도로 죽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잔학 행위를 본 후에, 증인은 파티에서 술을 따라야만 했다. 또한 부대가 비어서 경비가 허술해지면, 「위안부」도 보초를 서야만 했다. 중국군이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생활하였다.

이러한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한 것에도 상관없이, 증인과 그들에 대해 금전적 지불이 거의 없었다. 부대소속의 경우는 명목상의 「급료」조차 없었다. 수입이 조금 있었을 때도 「국방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가서 실제로 증인의 손에 남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武昌을 떠난 이후, 각지의 군 위안소를 전전하는 가운데 증인은 漢口에서의 출산을 포함하여 두 번 출산했지만, 생후 짬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만 했다. 그 외에도 임신했지만, 임신하면 내쫓기기 때문에, 자신 혼자서 민간요법(임신2개월 무렵, 3일간정도 식사를 하지 않고, 어떤 식물의 뿌리를 섞어 마신다)으로 중절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증인에게 는 자식을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일절 허락되지 않았다.

1945년 8월 증인은 군 위안소에서 일본이 패전을 알았다. 군은 증인과 「위안부」들에게 패전을 알리지 않고 방치했다. 이 무렵 다른 부대(독립 혼성제17여단)에 있던 한 일본군인이 같이 가자고 하였다. 증인은 조선에 돌아갈 방법도 모르고 생명을 지킬 아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으로부터 방치되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 그 일본군인 함께 일본에 가 결혼하는 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일본인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중국을 벗어나자 증인을 버렸다.

일본군으로부터 방치된 전 「위안부」의 상황은 비참함의 극치였다.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국인과 함께하는 자도 있었다. 중국의 군인에 몸을 파는 자도 있었다. 증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남성과 함께 되어, 일본에 온 조선인 여성도 있었다.

증인은 한 재일 조선인 남성의 소개로 재일 조선인 H가 하고 있는 식당에서 취사 일을 하게 되었다. 이후 H가 사망할 때까지 증인은 H와 함께 생활한 (증인은 H와는 성적관계가 전혀 없었다.). H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H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도, 밤마다 술을 마시는 날이 계속되었다. 꿈에는 언제나 전쟁터가 나타났다. H의 사후 가족도 없이, 중국에 두고 와야 했던 두 명의 아이에게로 죄책감을 안고, 혼자 생활했다.

이상처럼 증인은 일본군에 의해 16세부터 23세까지의 7년 간, 「종군위안부」로서 인간의 자유, 성적자유를 철저히 박탈당한 성적 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고, 그 사이 항상 생명의 위기에 시달렸고, 전후에는 조선에 귀국할 방책도 부여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일본에서의 생활을 할 수 없이 해야만 했다.

일본군, 일본정부 책임과 관련한 자료

1) 武昌에 위안소가 개설된 경위

武昌은 1937년 12월에 中支邦 방면군이 남경을 점령한 후 대본영은 1938년 8월 22일에 中支邦 파견군에 대해 「漢口부근의 요지 공략점거」를 명하고, 武漢(武漢은 漢口, 武昌, 漢陽의 세 도시) 공략작전이 발동되었다. 9월 28일 「재 상해 총영사관대리」로부터 「외무장관」에게 연락회의 결정 사항으로서 「『漢口공략후 邦人 진출에 관한 응급처리요강』 송부의 건」이 보내졌다. 이것에 의해, 「3, 거류민 이외의 진출은 북귀회망거류민의 수송에 여유를 살려 후에 진출 후 신속하게 운영을 개시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군대위안부 개설을 위해 진출하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고」로 되어, 신규 진출자였어도 「군대위안소개설」을 위해서라면 우선적으로 인정하려고 했다. 10월 26일에 中支邦파견군의 주력, 제11군이 漢口를 점령하고, 10월 27일에는 武漢 3진을 완전 점령하였다. 武漢점령 직후 일본군은 「위안소」개설을 사전에 상정하여, 위안소업자에게 특별 편의를 꾀하였다.

11월 3일에 中支邦파견군의 제2군이 漢口에 입성하고, 漢口·漢陽의 경비를 맡았다. 같은 해 12월 10일자로 출동한 제2군사령부 「제2군 상황개요」의 「제4 漢口 및 漢陽경비」의 3(2) 외출, 위안」에는 「외출은 경비 제1주의에 기초한 인솔외출, 위안소 출입을 위한 외출 이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고 위안소는 11월25일로 개시하여 표 제도에 의해 혼잡을 방지하고 황군의 면목을 유지하는 것에 주력하여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11월 25일부터 위안소가 개설된 것, 또한 군이 표제도 등 운영에도 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경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漢口병참사령부소속의 군의를 지낸 나가자와 켄이치는 「武漢함락과 함께 상해, 남경에서 대기하고 있던 매춘업자들은, 위안부를 데리고 계속 武漢을 목표로 하여, 양자강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파견군은 그들을 군수품취급하고, 우선 수송했다」(나가자와 켄이치『漢口위안소』50p.) 「쇼우와 13년(1938년) 11월 중순 漢口 병참 사령부는, 상급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위안소에 함께하는 가옥을 선정하여, 여성들을 데리고가 계속 오는 위안소업자를 입거시키고, 위안소개설까지 하게 되었다」(같은 책 55p)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같은 책에 의하면 군은 병참 업무의 일환으로서, 위안소의 이용규정·요금의 제정, 정기적 성병 검사, 漢口위안소 조합의 조직화 등도 포함하여, 위안소의 관리·통제·운영을 하였다. 그 후, 이 漢口위안소는 「그 내용과 규모에 있어서, 支邦파견군 유일의 것이 되어, 패전의 날까지 계속 번성했다」(같은 책 62p) 라고 한다.

漢口の 대안에 있는 武昌의 위안소도, 漢口の 위안소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설되었다고 추정된다. 漢口에서 위안소가 개설된 직후의 11월 30일 현재의 「직업별통계표」(재漢口총사령관)에 의하면, 漢口에서는 「여관요리, 藝妓, 위안소」의 신규본업자가 남17, 구본업자가 남2, 漢口の 신규「藝妓, 작부, 창부, 기타」가 그 수「150명」이지만, 이것에 비해 武昌의 「여관요리, 藝妓, 위안소」는 신규본업자가 남33, 武昌의 신규 「藝妓, 작부, 창부, 기타」는 「245명」에 달하고 있다. 이 자료로부터, 漢口에서 위안소가 개설된 거의 같은 시기에 武昌에도 위안소가 새로이 개설되었다는 것, 반드시 「위안부」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지만 「藝妓, ...」의 사람 수는 漢口를 웃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쇼우와 13년 재漢口총영사관 경찰사무상황」등 일본정부의 자료에서도 모두 군위안부는 아니지만 武昌에는 245~292명의 관련 여성들이 있었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한 군의 나가자와 켄이치는 「武昌과 漢口の 병참 사령부는, 어느 곳도 쇼우와 13년 8월, 武漢 함락과 함께 개설된 것으로, 업무의 종류, 규모는 비슷하고, 위안소도 청구받았다. 경영자는 대부분 내지인이었고, 위안부는 일선(日鮮) 혼합으로 약200명 있었다. 성병검사는 北村군위가 담당하고, 漢口와 마찬가지로 경영도 감독도 했다」(전게서 220p)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은 武昌위안소 개설의 경위는, 증인이 전술한 것처럼 漢口를 거쳐 武昌에 도착한 것은 武漢공략 후부터 군 위안소가 개설된 사이의 11월경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2)武昌의 위안소 「세계관」

증인이 약3년 간 있었던 武昌의 위안소의 모습은 전술한 대로이다. 武漢공략작전을 수행한 中支邦파견군의 주력인 제11군은, 오카무라를 사령관으로, 제6·제7·제27·제101·제106의 오개 사단과, 쓰다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漢口를 점령후,大本영은 武漢주변지역을 작전의 한계로 하고, 그 이상 전선의 확대를 막기 위해, 작전에 참가한 각 사단은 武漢주변 지역에서 경비체제로 바꾸어, 제2군은 전투서열을 해체, 제2군사령부는 내지 귀환이 되었다. 武漢지구경비를 담당한 제11군 가운데, 제6·제9사단에 대해서는, 『支邦사변록군작전(2)』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38년) 11월1일, 제6사단에 ... 武昌지구에 작전준비와 경비를 명령. 제 6사단은 武昌지구에 이전하여...」(209p), 「12월 5일, 군의 경비지구의 변경을 명령. ...제6사단은 사단사령부를 武漢대학(武昌)에 두고, 다리 이북의 철도 및 도로의 경

비, 崇陽堂에 따르는 지구의 경비, 武昌지구의 경비를 맡음. 제 9사단은 다리 이서의 철도 경비, 어촌 근처부터 상류인 양자강대안의 경비, 카쿠슈 지구의 경비를 맡음. 사단사령부는 다른 곳에 위치한다」(210p). 이 같이 제6사단은 武昌지구를, 제9사단은 武昌 주변지역을 경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증인이 있던 「세계관」은 「군(군인·군속)전용의 위안소」로 「도시 등에서 군이 인가(지정)했던 위안소」에 해당한다. 군은 漢口·武昌의 위안소에 대해, 「위안부」 징집·도항으로의 군·헌병대·총영사관의 관여로부터, 군에 의한 업자·「위안부」의 이송·관리규칙·요금·이용시간의 제정, 위안소시설의 제공, 업자·「위안부」의 통제, 군의에 의한 정기적 성병 검사, 부대장교에 의한 관리·감독·경영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漢口·武昌의 위안소는 비록 민영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운영에 관해서도 군이 관여하고 있고, 주체는 군이었으며, 민간업자는 그에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전개서 62p) 전형적인 예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위 글은 송신도 소장-정대협 번역의 소장인데 정확한 것을 확인해야 함-을 거의 편집함
본문에 수록된 자료목록기재와 자료 복사??